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정보전송자 기준(영 제42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(법 제35조의2 신설)되어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해당 범위 구체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(법 제35조의2제1항)와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제3자 대상 정보 전송자(법 제35조의2제2항)의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의 범위를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일반수신자 기준(영 제42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(법 제35조의2 신설)되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외에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 등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해당 기준 구체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을 규정
 - 전송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,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, 전송내역 기록·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한 개인정보가 안전한 기준을 갖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정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환경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전송 요구 규정(영 제42조의4~제42조의5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된 전송 요구 정보 범위 및 전송 요구 방법 등 구체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정보를 본인 대상 전송정보와 제3자 대상 전송정보로 구분하여 구체화(영 제42조의4)
-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(영 제42조의5)
 -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 목적, 전송받는 자 등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고, 정보수신자를 통한 전송 요구 및 정기적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
 -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시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법률규정 구체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전송 요구 정보 범위 및 전송 요구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
- 전송을 제한하는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분야간 개인정보의 이동·연계 활성화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전송 방법·절차 및 전송 거절·중단 규정(영 제42조의6~제42조의7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(법 제35조의2 신설)되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송 방법·절차, 전송 거절·중단 방법 등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정보전송자의 전송 방법 및 절차 관련 사항 규정(영 제42조의6)
 -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, 안전성·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, 중계전문기관 활용, 정보주체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 정보 처리, 전송정보 보관,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·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
- 정보전송자의 전송 요구 거절 및 전송 중단 관련 사항 등 규정(영 제42조의7)
 -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·중단할 수 있는 사유, 거절·중단시 통지 절차, 철회 방법 등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전송 방법, 전송 거절·중단 관련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(영 제42조의8~제42조의11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도 도입(법 제35조의3 신설)으로 전문기관 업무, 지정절차, 지정요건 세부기준, 취소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해당사항 구체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,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영 제42조의8)
-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*, 지정·재지정 절차, 중요사항 변경, 예비지정,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(영 제42조의9)

* 기술수준 및 전문성,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, 재정능력 등

-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, 취소 절차, 취소 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(영 제42조의10)
-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(영 제42조의11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,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환경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6.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·감독(영 제42조의1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보호위원회가 전송요구권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를 관리·감독하도록 의무(법 제35조의4)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 구체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,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정보전송자·일반 수신자·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·감독 사항 규정
- 보호위원회가 관리·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보호위원회의 관리·감독을 통해 정보전송자 및 정보수신자 등이 전송요구권 관련 사항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·운영(영 제42조의1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(법 제35조의4 신설)됨에 따라 해당 사항 구체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플랫폼 등록절차,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,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,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플랫폼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, 참여기관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 및 연계를 위한 인프라 환경 구축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8. 통지 방법·절차 정비(영 제15조의2제3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(법 제35조의2 신설)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송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경우 통지 방법 등을 구체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‘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’(법 20조제2항) 및 ‘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 통지’(법 제20조2제1항)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기존 통지제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통지 업무 관련 효율성 및 편의성 증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9.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(영 제47조제4항·제5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송요구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에 소요되는 수수료 산정기준 등 구체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
-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 구축비용, 운영비용 및 대상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행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통해 정보전송자가 적극적으로 전송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10. 업무의 위탁(영 제62조제3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사항을 기존 업무위탁 규정에 추가
- ※ ①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 업무 지원, ②관리·감독 중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, 기능 적합성 검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, ③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·운영 등 기술 업무 지원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11.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정비(영 제29조의2제1항·제4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(자격취득 후 3년간) 비활동·무실적 결합전문기관을 정비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
- 또한, 법 개정(제66조 제2항 신설)에 따라 공표명령을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반영할 필요
-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되지 못한 결합전문기관이 곧바로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입법공백 해소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(3년마다)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
-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최근 1년 이내에 지정취소 및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합 활성화 유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12. 자체결합 관리·감독 서류의 분기별 제출 근거 명확화(영 제29조의4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」에서는 자체결합 관리·감독 서류를 ‘분기별’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시행령에서는 관련 의무를 ‘매년’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명확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결합전문기관 관리·감독 목적의 서류를 ‘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’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조항 명확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과 관련된 자료의 분기별 제출에 대한 법령상 근거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「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시 법제처 권고사항